

# 산업세계화와 경쟁규범 적용의 세계화



심명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론

2007년 8월 미국 법무부(D.O.J.)는 대한항공과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 등 두 항공사가 승객 및 화물의 운임을 담합하였다

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별도로 두 항공사에는 민사적 책임도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006년 3월 세계적으로 유수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 간부들이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죄목으로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그 전 해에 해당 기업들은 수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와

는 별도로 두 항공사에게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과 개인소송에 직면하였다.

유럽에서도 사정은 유사하다. 최근 수년간 한국기업들은 EU의 경쟁법을 어긴 혐의로 수백만 유로에서 수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에서 경쟁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EU에서도 해당 기업을 주시하기 마련이고, 그 반대의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미국과 EU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역외에서 이루어진 반경쟁적인 행위의 단속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많은 나라에서 경쟁당국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곤 한다.

도대체 어떠한 배경 하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고, 이는 어떠한 논리로 해석되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경쟁법 및 관련 규범의 역외적용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경쟁법 역외적용의 세계적 확산 움직임

미국과 EU 등이 국제적인 반경쟁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것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도 경쟁당국의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적발 빈도가 급증하였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발 사례들도 이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우리 경쟁당국 역시 뒤따라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적극 합류하고 있다. 이제 막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경쟁정책을 채택한 중국도 역외적용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60여 국가가 자국 경쟁법에 역외적용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국제적인 반경쟁행위의 규제에 나서는 나라다. 미국 경쟁당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특히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였다. 그리고 미국 경

쟁당국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6월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법'<sup>1)</sup>(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 Reform Act)을 제정, 기업과 개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개인에 대한 인신구속형량도 높이는 등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카르텔 역시 수단의 일환으로 인신구속형을 적극 활용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카르텔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배제조항<sup>2)</sup>(carve out provisions)을 포함하는 담판합의<sup>3)</sup>(plea agreement)를 체결하여,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중 특정 개인들에 대해서는 담판합의의 보호를 적용하지 않고 형사상 기소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은 징역형과 같은 인신구속이야말로 카르텔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EU도 국제적인 반경쟁행위의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이다. 기업 간 담합이 EU 내 교역에 영향을 주거나 회원국 간의 교역에 영향을 줄 경우 원칙적으로 유럽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진다. 외국기업이 연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U 외부에서 이루어진 카르텔이라도 그 행위가 EU 회원국의 교역에 영향을 준다면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카르텔이 EU 내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영향을 주면 EU 집행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EU 집행위원회는 EC조약 제8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

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액수는 당해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기본 벌금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지속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카르텔 공모와 같은 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통상 20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카르텔의 지속기간에 따라 벌금이 가중되는데, 1~5년 사이에는 50% 정도의 벌금이 추가되며, 위반의 지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매년 10%의 벌금이 추가된다. 대체로 EU 경쟁당국이 경쟁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의 규모는 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EU는 범위법 기업에 대한 제재에는 적극적이지만, EU 집행위원회가 형사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벌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연루된 개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도 미국과 달리 EU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비단 미국, EU, 캐나다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의 경쟁당국도 2000년대 들어 국제적인 반경쟁행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이 국제카르텔에 대해 역외적용에 나선 최초의 사례는 '혹연전극봉 카르텔 사건'이다. 일본, 독일, 미국 국적의 6개 기업이 가격 및 판매지역 담합에 연루된 동 사건은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총 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 후 2003년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국적의 6개 기업이 매년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량과 판매가격을 담합한 이른바 '비타민카르

텔'을 적발하고, 총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는 원료용 비타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 같은 카르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한 것이다.



### 산업세계화와 경쟁법 적용의 세계화

미국 등이 국제적인 반경쟁행위에 대해 이른바 역외적용에 나선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지만, 1990년

대 중반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는 WTO 체제가 막 출범한 시점이고, 경쟁정책 이슈가 뉴 라운드 의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을 즈음이기도 하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단일시장의 구도로 심화되는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경과 국적을 뛰어넘어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과거와 다른 방식과 규모로 시장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미국과 EU의 경쟁당국이 역외적용의 논리를 앞세워 경쟁법 집행의 지평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고 있다고 해석된다.

국제적인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 내 교역, 국적을 뛰어

넘는 기업의 전략적 제휴와 기업군 간 경쟁(Alliance competition) 등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행위들이 기업활동의 범세계화에 따라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주권국가의 경쟁법으로 이러한 초국경적 행위를 규율하기는 극히 어렵다. 예를 들어 세계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기 마련이다. 국제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은 시장 진입의 거점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세계시장의 과점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 내 교역이나 네트워크 교역의 증가는 글로벌 차원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에 독점력을 행사하고 시장분할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준다. 기업의 전략적 제휴와 기업군 간 경쟁 등은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억압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시장에서 독과점화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초국경적인 반경쟁적 또는 경쟁제한적 행위들은 사실상 각국 경쟁법의 적용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해 행위, 행위자,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있어 관할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 등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할 대안의 모색이 절실했던 것이다.

특히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추세로 한 나라에서의 기업활동이 다른 나라의 시장경쟁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반경쟁적 행위가 적발되면 국내에서도 적발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기업들의 결정이나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높아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국의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경쟁법의 적용을 국내로만 한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경쟁당국의 입장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기업활동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자국의 경쟁법이나 경쟁규범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 글로벌 기업의 가중되는 Legal Risk

국제카르텔의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연루되었거나 관련된 임직원들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카르텔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카르텔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이나 개인은 직접구매자 소송(Direct Purchaser Actions), 간접구매자 소송(Indirect Purchaser

Actions), 후견인으로서의 국가소송(Parents Patriae Actions), 외국인구매자 소송(Foreign Purchaser Actions) 등 다양한 형태의 민사소송에 직면하게 되기 마련이다. 형사상의 반독점 위반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은 반드시 관련 민사소송에도 응하도록 되어 있다. EU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은 EU 회원국의 국내법원(national courts)을 통하여 그 행동을 중지시키고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의 형태에 따른 민사적인 배상도 모든 회원국에서 가능하다. 그동안 사적 집행에 다소 소극적이던 EU에서도 최근에는 민사소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나의 혐의가 포착되면 많은 나라에서 경쟁당국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기 마련이다. 미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EU 등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도 같은 혐의를 조사한다. 당연히 한국의 경쟁당국도 해당 기업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번 혐의가 인정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곤 하기 마련이다. 물론 각국의 경쟁당국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EU 등지에서 카르텔과 같은 반경쟁행위가 적발되면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를 참고하거나 자체적으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는 계기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실 우리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흑연전극

봉 및 비타민의 국제카르텔을 적발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EU 등지에서 이미 적발되고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확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 나라에서 반경쟁행위가 적발되면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이 이를 계기로 조사에 나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 글로벌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대응

한국경제의 위상은 세계 13위권 수준으로 올라갔다. 최근에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규모 또한 이들 못지않다. 경제적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경우가 더 이상 낮설지 않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위상이 오르고 한국기업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여러 가지 의미에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에서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점차 치열해지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기

업의 주의를 끌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이나 투자진 출국에서 규제당국의 주목을 받게 된다. 특히 경쟁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경쟁법과 제도를 새로 도입한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경쟁법과 경쟁규범의 적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 한국기업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특히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포함하여 각국이 국내법을 적용하여 징벌하고 처벌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카르텔과 같은 반경쟁적인 행위의 적발 사례는 전 세계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른바 '나비효과'가 일어나기 쉽다는 의미인데, 이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기업은 경쟁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가중되는 법적 위험(legal risk)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당히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들은 일단 경쟁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그 파장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광역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경쟁법 준수와 법 위반 예방, 법 위반시의 사후 대응 등에 있어서도 범세계적 전략을 추구해야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활동이나 비즈니스 행위가 이미 경쟁법이나 경쟁규범의 규제대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법적 위험(legal risk)에 대한 코스트를 치를 준비를 해

야 한다. 카르텔 등 경쟁법과 관련 규범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과 보상요구는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과징금, 벌금에 의한 벌금 및 형사적 처벌 등이 우선 당면하게 되는 코스트에 해당된다. 이러한 코스트를 가능한 한 적게 치르기 위해 기업은 사전, 사후에 다 같이 대응하거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전에는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뜻하지 않게 법 위반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준비 등이 요구된다. 기업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on Competition Policy : CPI)을 운용하거나 자율준수문화(Culture of Compliance)를 조성해 나가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CEO부터 신입직원에게 이르기까지 경쟁법 및 관련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도와 책임을 질지도 모르는 일련의 행동들을 파악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기업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언제 심각한 위험이 생겨날지 아는 것과 너무 늦기 전에 그 위험들을 피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이 경쟁법이나 관련 규범에 노출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노력들은 코스트의 절감을 위해 유효하게 활용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 법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해당 업무의 수

행 정지, 징계, 인사이동 등 사후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될 때가 있다. 물론 사후약방 문적인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CP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과징금 처분이나 벌금을 포함한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 참작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과징금 처분이나 형사적 처벌 그 자체도 시장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수위 또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다.

경쟁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형사적 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 사안의 당사자가 해당 기업과 경쟁당국, 또는 해당 기업과 법원 간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기업과 고객, 또는 해당 기업과 경쟁기업 간의 문제로도 확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법과 관련 규범을 준수하는 노력이나 이를 위반했을 때의 대응을 하나의 게임의 법칙처럼 이해해야 할 때가 많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해당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전개될수록 경기가 진행되는 필드는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외의 고객 및 소비자들은 카르텔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것이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1차 고객뿐 아니라 2차 고객들도 해당 기업과의 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OECD에서도 2007년 7월 ‘소비자 분쟁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권고 사항(Recommendation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을 채택한 바가 있다. 소비자의 분쟁조정 대상을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

매법, 약관규제법 등과 같은 소비자관련법 위반 사항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경쟁법 위반 사항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것이다. 고객과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피해(economic harm)가 더 이상 ‘소비자관련법’의 위반 사항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분야의 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까지도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OECD의 이러한 움직임은 경쟁법이나 관련 규범의 위반사항을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로 직접 연관시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것으로서, 장차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경쟁법이나 관련 규범이 이제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OECD 회원국들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또 한편으로 경쟁법이나 관련 규범을 위반한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업활동 및 사업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경쟁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당국 및 법원과 해당 기업, 그리고 소비자 간에 전개되는 게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게임의 법칙을 더

많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측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경쟁기업과 해당 기업이 다 같이 수세적인 입장에 있든, 하나는 수세적이고 다른 하나는 공세적이든 마찬가지이다.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활용하거나 법원에서 적용되는 量刑 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lines)에 명시된 경감요소를 감안하여 대응하는 것도 일종의 게임 전략일 수 있다. 국내기업과 공모한 외국기업이 선제적으로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국내기업은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한 위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조사대상인 카르텔 이외에 시장에서 행해져 여타의 카르텔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 Amnesty Plus<sup>1)</sup>, Penalty Plus<sup>2)</sup>, Omnibus Questions<sup>3)</sup>, Individual Leniency Program<sup>4)</sup>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1978년에

감면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93년에 동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감면제도를 본받아, 유럽 연합과 일본, 캐나다, 한국 등 국내외 경쟁당국들도 잇따라 자신신고 감면제도를 마련하였다.<sup>5)</sup> 이는 한편으로 한 국가의 경쟁당국에 자신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다른 국가들의 경쟁당국에도 감면제도를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사안에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지루한 조사와 소송에 직면해 있는 동안 경쟁기업들은 그들의 노력을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빠르게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 Amnesty Plus란 다른 카르텔도 신고하면 모든 카르텔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Penalty Plus란 다른 카르텔에 대하여 Amnesty Plus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하는 제도이다.

3) Omnibus Questions란 신고인이 인지하는 여타의 어떠한 카르텔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카르텔을 결성한 기업의 임직원이나 소속 기업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 차원에서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5) 전세계적으로 이미 30여 개국에서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